

“소송 대신 합의”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‘쑥’

-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, 4년간 연평균 19% 증가 -
- 95%는 중소기업·개인...양 당사자 조정 참여 시 66% 해결 -

소상공인 ◡와 중견기업 ◢는 상표권 관련 분쟁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며, 4년 이상 분쟁 중이었으나,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에 합의하며, 심판·형사고소를 모두 취하하고, 4년에 걸친 분쟁을 약 2달만에 해결했다.

최근 발상(아이디어) 탈취·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「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」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.

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신청 후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10개 기업 중 6.6개 기업이 조정에 합의하는 등 조정 성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, 지식재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되고 있다.

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】

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, 상표, 디자인,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, 부정경쟁행위, 직무발명 등의 분쟁을,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,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. 소송이나 심판 대비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,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, 확정판결과 동일한 '재판상 화해' 효력이 발생해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,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.

<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도별 신청 건수>

특허청(청장 이인실)에 따르면 지난 '19년 45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'22년에는 76건으로 4년간 연평균 19% 증가*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올해는 4월 현재(4.21 기준) 38건이 접수되어 오는 12월에는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. [붙임1]

*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조정 신청(건) : ('19) 45 → ('20) 70 → ('21) 83 → ('22) 76 → ('23) 100(예상)

<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조정 성립률 >

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%에 달하는 등 분쟁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'22년 기준,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%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여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%가 해결*된 것으로 조사되었다. [붙임1]

* 전체 76건, 성립 35건, 불성립(의견불일치 등) 20건, 조정불응 19건, 취하 2건

<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>

최근 5년간('19~'23.4.21)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,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·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%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2]

이는,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*되고,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,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,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또한 신속하고 저비용이라는 장점 뿐 아니라, 분쟁 해결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* '22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 평균 처리기간: 62일

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다”라며, “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,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·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(www.koipa.re.kr/adr)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 (1670-9779)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양재석 (042-481-5213)
		담당자	사무관	이우정 (042-481-8227)



붙임1

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

□ 최근 5년간('19~'23.4.21) 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	'19	'20	'21	'22	'23.4.21	합계	
신 청		45	70	83	76	38	312	
처 리 현 황	성 립(A)	19	32	38	35	6	130	
	불성립 (B)	조정안 불수용	2	5	4	5	-	16
		의견 불일치	8	17	10	15	3	53
		소계	10	22	14	20	3	69
	조정 불응*	15	16	31	19	4	85	
	취 하	1	-	-	2	-	3	
	진 행 중	-	-	-	-	25	25	
성립률(A/(A+B))		66%	59%	73%	64%	67%		

*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조정에 응하지 않아, 조정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

붙임2

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

○ 최근 5년간('19~'23.4.21) 신청인·피신청인 분류별 신청 현황(누적)

(단위 : 건)

신청인 \ 피신청인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개인	기타*	합계
신 청	대기업	-	-	-	1	-	1
	중견기업	-	-	2	-	-	2
	중소기업	5	8	227	21	8	269
	개인	8	3	10	4	3	28
	기타*	-	-	12	-	-	12
합계		13	11	251	26	11	312

* 공공기관, 외국기업 등

○ 최근 5년간('19~'23.4.21) 신청인 분류별 신청 현황(연도별)

(단위 : 건)

구 분	'19	'20	'21	'22	'23.4.21	합계
대기업	-	-	1	-	-	1
중견기업	-	1	1	-	-	2
중소기업	35	59	71	73	31	269
개인	9	8	6	3	2	28
기타*	1	2	4	-	5	12
합계	45	70	83	76	38	312

* 공공기관, 외국기업 등



“ 특허, 상표, 영업비밀 등의 분쟁은?
이제 조정으로 해결하세요!
**산업재산권
분쟁조정제도** ”



❖ 산업재산권 분쟁제도란?

산업재산권 분쟁에서 소요되는 비용·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[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]에 양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

❖ 신청 분야

- 산업재산권 분쟁 (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)
- 직무발명 관련 분쟁
- 영업비밀 관련 분쟁
-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

❖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장점

- 신속한 분쟁해결 (3개월 이내)
- 간편 절차 신청비용 무료
- 절차 비공개 (비밀 보장)
- 전문가의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

❖ 신청 자격

- 산업재산권자·실시권자·사용권자
- 직무발명자·영업비밀 보유자
- 부정경쟁행위의 분쟁 당사자
-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

❖ 신청 방법



홈페이지 www.kopia.re.kr/adr
우편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
T 1670-9779 F 02-553-5865 E-mail ip.adr@korea.kr

❖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효력

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

